외국인에게 증정하는 선물의 기준 지침

1. 목적

본 지침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증정하는 선물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우에 균형을 유지하고 과다한 예산의 낭비 없이 외국인의 방한 효과를 높이는 한편,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부식하는 데 있다.

2. 적용 범위

본 지침은 각 원 ·부 ·처 ·청 지방자치 단체 및 정부관리 기업체(이하 "정부기관"이라 한다)가 외국인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선물의 정의

본 지침에서 "선물"이라 함은 정부 기관이 수여하는 포상(각종 포상자에 대한 상패, 표창패, 감사패, 기념패, 및 기장포함) 이외의 일체의 선사품을 말한다.

4. 기본 지침

가. 각급 정부기관이 외국인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경우에는 항상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증정함을 명심해야 한다.

나. 값비싸고 과분한 선물을 증정함으로써 수령자에게 부담감을 주거나 윗사람이 주는 선물과의 균형을 잃게하여 의전상의 결례를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다. 정부포상(훈장 ·표창장 ·감사장 또는 각종패)을 할 때에는 이로써 선물을 대신하고 별도 선물은 증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선물증정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기관(또는 개인)이 증정토록하며, 특히 중복으로 인한 낭비를 피한다.

5. 세부 지침

가. 증정 계획의 작성

(1) 정부기관이 외국인을 초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정부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영접계획을 작성하되, 이에는 반드시 선물증정 계획도 포함하여야 한다.

(2) 정부기관간의 조정은 다음 요령으로 한다.

(가) 대통령각하(또는 국무총리) 예방이 있을 경우 :
일체의 선물증정 계획을 대통령(또는 국무총리) 의전비서실에 제출하여 사전 조정을 받을 것이며, 이 계획의 사본 1부를 총무처에 제출한다.

(나) 피초청자가 여러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초청 주무기관은 타방문 기관의 선물증정 계획도 종합하여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나. 선물의 선정 기준

(1) 선물의 선정은 방문자의 지위, 방문목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선물은 필히 국내에서 생산 제작되는 물품을 선정함으로써 국산품의 해외선전 효과를 겸하도록 한다.

(3) 해외출장시 휴대하는 선물은 외관상 형편을 고려하여 가급적 휴대하기 간편한 것으로 한다.

다. 지도 계몽 등

각급 정부기관은 본 지침의 이행이 관련 민간단체에도 널리 파급되도록 지도 계몽하여야 한다.

라. 경과조치

본 지침은 앞으로 증정하는 선물에 적용하며, 이미 제작된 선물은 이를 그대로 활용한다. 끝.